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예방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 인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규정하여 제명을 수정하였으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두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정책을 수행하고자 관련 사항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명 및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